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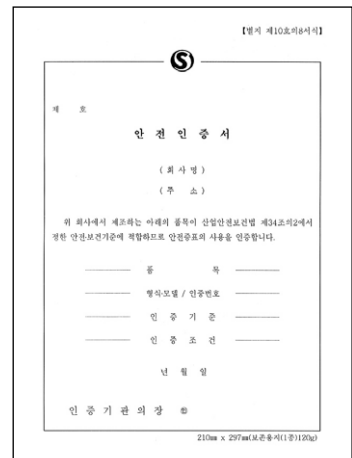
#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 벌금 · 징역 부과기준

산업안전보건법의 과태료와 벌금 및 징역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의 위반사항”에 있어 조치기준 및 이와 관련된 제반 관계서류의 작성에 대해 법 조항별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안전보건관계자의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1.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계·기구 등에 다른 안전증표 또는 유사한 증표를 표시 또는 광고한 경우(제34조의 4)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기계·기구 등의 포장·용기 등에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안전증표 또는 이와 유사한 증표를 표시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 가. 조치기준 : 객관적으로 이행에 필요한 적정기간을 부여하여 표시제거 또는 광고중단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불이행 시 범죄 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 및 행정조치 병행
- 나. 부과금액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다. 관계서류 : 안전인증서



## 2. 안전증표의 제거 등의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제34조의 6)

노동부장관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증표 또는 이와 비슷한 증표를 표시한 기계·기구 등이나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이 취소된 기계·기구 등이 유통되고 있는 경우 안전증표의 제거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 조치기준 : 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 및 행정조치 병행
- 나. 부과금액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 3. 검정을 받지 않은 보호구를 제조·수입한 경우 (제35조 제1항)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된 보호구를 계속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보호구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호구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에 합격한 보호구
2.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보호구
3.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보호구

【별지 제9호의2(가)식】

성능검정 합격증	
신 명 번	① 사업장명
	② 사업장등록번호
	③ 소재지
	④ 대표자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합격번호
	⑦ 양력 및 월서
	⑧ 품목명
	⑨ 구조 및 경계
	⑩ 사용조건
	⑪ 합격유효기간
	⑫ 제정기관명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에 합격하였으므로 합격증을 발행합니다.	
년 월 일	
검정기관의장	

210mm x 297mm(인용용지 54cm(세로)용지)

- 가. 조치기준 : 즉시 제조·수입을 중지시키고 검정을 받도록 행정 조치하되 불이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
- 나. 부과금액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 다. 관계서류 : 성능검정 합격증

#### 4. 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불합격된 보호구와 합격이 취소된 보호구를 제조·수입·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 목적으로 진열하는 경우(제35조 제5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이에 불합격된 보호구(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면제받은 보호구를 제외한다)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의 합격이 취소된 보호구는 이를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 가. 조치기준 : 즉시 제조 또는 수입을 중지하고 검정기관 등을 안내하여 검정을 받도록 행정지도하고 불응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
- 나. 부과금액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 5. 수거·파기명령에 불응한 경우 (제35조 제6항)

노동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제품의 수거·파기를 명할 수 있다.

- 가. 조치기준 : 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 및 행정조치 병행
- 나. 부과금액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 6. 자체검사의 미 실시 (제36조 제1항)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체검사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 9. 제조·사용 설비기준 미준수 및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에 의하지 않고 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경우(제38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유해물질 제조·사용자 등”이라 한다)는 그 제조·사용·해체·제거설비를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에 의하여 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여야 한다.

가. 조치기준 : 즉시 제조·사용을 중지시키고 적정기간을 부여하여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 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

나. 부과금액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10. 허가기준 미준수시 설비 개조·이전 등 명령 위반 (제38조 제4항)

노동부장관은 유해물질 제조·사용자 등의 제조·사용·해체·제거설비 또는 작업방법이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사용·해체·제거설비를 수리·개조 또는 이전하도록 하거나 당해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에 의하여 그 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가. 조치기준 : 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


나. 부과금액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11. 허가기준 위반 등에 대한 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명령 위반(제38조 제5항)

노동부장관은 유해물질 제조·사용자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7, 2002. 12. 30>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5. 자체검사결과 이상을 발견하고도 즉시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가. 조치기준 : 즉시 범죄인지보고후 수사에 착수(단, 영업정지기간 등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별표 20의 규정에 의함)

나. 부과금액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 

(자료제공 : 서울지회 동부출장소 조영수 소장)